

# 최저임금 옴부즈맨이 되어주세요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인 것으로 8월 1일에 고시되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월 1,015,740원이 됨으로써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급여로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의 최저임금 고시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정진호·강승복(2012)<sup>1)</sup>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이른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8%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원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6.1%였다.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최저임금법 제1조)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

1) 정진호·강승복(2012), 『임금실태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준수가 바탕을 이루어야한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350번으로 전화를 걸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 실업급여 등 각종 노동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센터를 설치하였고, 자신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4580지킴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도 갖추고 있으며, 정기·수시 근로감독도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1318 행복일터 캠페인과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안심알바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호 특집의 목적이다. 한국과 동일하게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직종별로 실질적인 최저임금(award)이 적용되는 호주, 연방·주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사한 제도의 시행이라는 점에서는 이들 국가와 한국이 그다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독자들이 조금 당혹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최저임금은 임금협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휴업급여 등에도 반영될 정도로 실질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매년 6월이면, 노사정 3자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 얻게 되는 시사점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준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정 3자가 모두 최저임금 지킴이, 최저임금 옴부즈맨(ombudsman)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려는 사업주의 의식과 실천,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식과 실천,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조가 보태져 ‘공정성(fairness)’이 굳건한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노사정 3자가 함께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KLI**